

신용정보관리규정

으뜸자산운용(주)

신용정보관리규정

제 정 2021. 07. 30.

개정(별표) 2025. 03. 05.

개정 2025. 03. 17.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처리의 수집·처리·이용 및 보호 등과 관련하여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정보”라 함은 법 제 2 조에서 정한 정보로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등을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란 제 1 호의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3. “신용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6.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이라 함은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는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제 3 조(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지정) 준법감시인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서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 4 조(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업무)

-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5 조(신용정보관리·보호 업무의 보고)

-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 4 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별표 서식 제 2 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 법 제 20 조제 4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
 2. 제 1 호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

제 3 장 신용정보 수집·조사 및 활용

제 1 절 신용정보의 처리

제 6 조(신용정보 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 ① 회사는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 목적을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 하여야 하고 그 특정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리고 [별표 서식 제 4 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 법 제 15 조 2 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3.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4.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 사실 고지
 5.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관계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 ③ 회사가 본 조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거래 또는 계약이행을 위한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회사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서식 제 4 호]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 사실 고지
 6.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관계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 ② 회사가 본 조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거래 또는 계약이행을 위한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 제 32 조 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및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 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등)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개인과 거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가 목적 외 이용에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동의한 경우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 ① 회사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다음 각 호의 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제공·이용하는 경우에는 제 7 조 및 제 8 조를 준용한다.
 1. 「주민등록법」 제 7 조제 3 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 7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 80 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 31 조제 4 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 ② 회사가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접근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절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및 관리

제 10 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 ① 회사는 다른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를 위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하지 아니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회사가 전항 단서에 따라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 위탁계약의 체결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신용정보 관리기준 및 보안조치)

- ① 회사는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①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에 [별표 서식 제 3 호]에 따른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 한해서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
 - 2. 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출입 통제.
 - 3.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모두 삭제.
 - 4. 보존기간이 만료한 개인신용정보의 폐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폐기결과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 조(개인신용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 ① 회사는 고객 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발생시 제재기준

(※ 징계구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취업규칙 제 20 조(징계의 종류)를 기준으로 함)

징계구분	업무목적외 유출발생시	부당이용/무단이용
경고	-	1 건이상
견책	1 건이상	5 건이상
감급	5 건이상	50 건이상
정직	50 건이상	100 건이상

제 4 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 1 절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 14 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 ① 회사는 법 제 31 조에서 정하는 신용정보활용체제(별표 제 1 호)를 공시하여야 한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2. 신용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4.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 ② 회사가 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제 2 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 15 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 ①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에 본인임을 확인받아, 다음 각 항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회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 이용주체, 이용목적, 이용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제공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②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 년간의 사항을 조회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방법은 [별표 서식 제 6 호] 에 따른다

제 16 조(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 ①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통보를 요구 받은 경우 회사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최근 1 년간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내용은 3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는 데에 직접 소요되는 우편요금, 배송요금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17 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도 평가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하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권리 내용, 행사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 1 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사후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18 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삭제청구 등)

- ①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에 본인임을 확인 받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한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제 2 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 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④ 회사는 제 2 항과 제 3 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 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 3 절 신용정보 누설 통지

제 19 조(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① 회사는 신용정보가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별지 서식 제 11 호]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 해야 한다.

②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이란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2.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

③ 회사는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2.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3.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누설된 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조치를 취한 뒤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부 칙

제 1 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신용정보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단, 이 지침 시행 이후 신용정보를 새로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 2 조(시행일) 이 지침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202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 1 호>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에 따라,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

I.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1. 이용목적

- 1) 신용 관리 등 내부 경영 관리
- 2)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 3)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1)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

2) 신용거래정보

- 가)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나)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 다) 금융질서 문란정보: 부정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라)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II. 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신용정보 제공대상
 - 1)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2)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한함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III.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IV.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 (해당사항 없음)

V.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신용정보 제공·열람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등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방문,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선택적 정보:3개월, 필수적 정보:5년)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을 위한 경우는 제한됩니다.
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 관계 설정이 거절되거나 중지된 경우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권익침해구제방법

개인신용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당사 또는 다음의 기관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www.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VI.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 성명 : 준법감시인 문희강
- 부서 : 컴플라이언스팀
- 연락처 : 051) 991-0911

[별표 서식 제 2 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

문서번호: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00 검사국장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실적 및 대표이사, 이사회에 대한 보고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상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1. 법 제 20 조제 4 항 각호의 업무수행 실적				
구분		이행일(기간)	주요 내용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신용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여부 점검				
2. 법 제 20 조제 5 항에 따른 보고 실적				
보고 주기				
보고 내역				
구분	보고일	주요 보고사항 및 후속조치 등		
대표이사				
이사회				

※ 첨부서류 1.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 보고서

2. 업무수행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첨부서류 1.과 중복되는 경우 생략 가능)

0000 년 00 월 00 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 _____ 서명 또는 (인)

개인신용정보 관리대장

■ 신용정보주체명 :

구 분	수집 이용	수집일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부서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목적	정보취급자 (담당자)	폐기일·분 리보관일
	제공	제공일	제공항목	제공 대상 자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목적		

※ 신용정보주체별 개별건으로 작성·관리

※ 정보취급자란에는 운용부서 담당자를 기재

※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은 정보취급자의 결재라인에 있는 자 및 준법감시부서 담당자로 제한

※ 상거래 관계 효력 종료시점 이후에는 5년간 분리보관

[별지 서식 제 5 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 (선택 동의서)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 및 제 17 조,제 22 조,제 23 조,제 24 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편의제공,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하시더라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 / 동의하지않음)

수집·이용 목적	- 고객관련 마케팅 (문자 발송 등) - 서비스 관련 고객상담
수집·이용 항목	-개인식별번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상거래 관계 효력 종료시 까지

▶ 본인은 상기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고 동의여부를 표기하였으며 고객권리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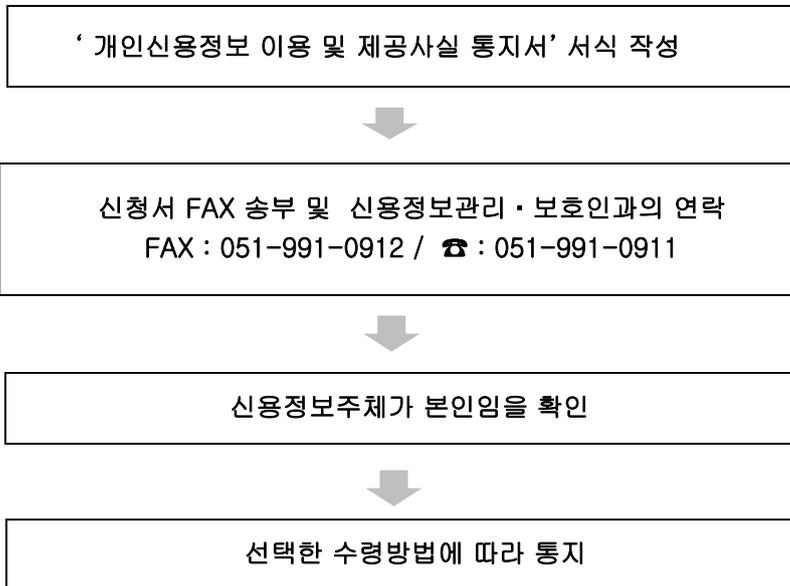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구권 안내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방법



2. 신청결과 통지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수령, 우편, e-mail, 정기적 발송의 방법으로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 :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조회 및 통지 신청서 > 1 부.

[별표 서식 제 7 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철회 신청 안내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신용도 등 평가 목적은 제외) 동의에 대한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할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32 조)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 연락 중지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

- ①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FAX 송부 (FAX : 051-991-0912)
- ② 담당자 접수 (☎ : 051- 991- 0911)
- ③ 접수확인
- ④ 연락중지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실행 (접수 후 약 7 영업일 내외 소요)
- ⑤ 신청서 상의 요청방법으로 결과 안내

※ 붙임 : < 연락중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신청서 > 1 부.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권 안내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8 조 및 동법 시행령 33 조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 당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 절차

- ①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FAX 송부 (FAX : 051-991-0912)
- ② 담당자 접수 (☎ : 051- 991- 0911)
- ③ 접수확인
- ④ 열람 청구 자료 준비 및 정정 청구내역 처리 (접수 후 약 7 영업일 내외 소요)
- ⑤ 신청서 상의 요청방법으로 청구결과 안내

※ 붙임 :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서 > 1 부.

개인신용정보 열람 [] / 정정 [] 청구서

■ 으뜸자산운용(주) 귀중

정보주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청구내용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및 내용 <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의 제 3 자 제공 현황 <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input type="checkbox"/> 정정	※ 정정 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기재.
결과 통지 방법	<input type="checkbox"/> 전화 (문자 / 알림) : <input type="checkbox"/> 직접내방 <input type="checkbox"/> e-mail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3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에 대한 안내

■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및 통지 절차

- ①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FAX 송부 (FAX : 051-991-0912)
- ② 담당자 접수 (☎ : 051- 991- 0911)
- ③ 접수확인
- ④ 삭제 또는 분리보관 등의 처리 (접수 후 7 영업일내 처리)
- ⑤ 신청서 상의 요청방법으로 청구결과 안내

※ 붙임 :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 1 부.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서

당사에서 상거래 관계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에 관하여 고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 ①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FAX 송부 (FAX : 051-991-0912)
- ② 담당자 접수 (☎ : 051- 991- 0911)
- ③ 접수확인
- ④ 신청내용처리 (접수 후 약 7 영업일 내외 소요)
- ⑤ 신청서 상의 요청방법으로 청구결과 안내

■ **으뜸자산운용(주) 귀중**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요청항목 기재		
결과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전화 (문자 / 알림) : <input type="checkbox"/> 직접내방 <input type="checkbox"/> e-mail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상거래 거절근거 신용정보 고지 서비스를 위해, 상기 입력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 주체	으뜸자산운용(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청시, 본인 확인 및 해당서비스 제공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3년

신용정보보호법 제 38 조 제 38 조의 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서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누설신고서			처리기간 : 즉시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	
본점 또는 기관 소재지		대표자	
누설된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누설된 시점			
누설 경위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관련한 피해구제 절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p>「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인)</p> <p>금융감독원장 귀하</p>			
※ 구비서류 1. 누설경위와 관련한 증거서류 등 관련문서 2.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관련한 증빙 서류 등 관련문서			수수료
			없음